2019년도 녹색자금 공모사업 공고

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는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림 환경기능 증진을 위하여 "2019년도 녹색자금 공모사업"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년 7월 9일

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

□ 공모개요

공 모 명	사업기간	총 사업비	모집방식
2019년도 녹색자금 공모사업	'19년 1월 ~ 12월	21,000백만원	일반공모

□ 공모기간 (사업분야별로 상이)

사업분야	공모기간	접수기간	비고	
나눔숲 조성사업	'18. 7. 9.(월) ~ 8. 9.(목) 14:00	'18. 7. 23.(월) ~ 8. 9.(목) 14:00	복지시설나눔숲(실내) 복지시설나눔숲(실외) 무장애나눔길	
숲체험・교육사업	'18. 7. 9.(월) ~ 8. 2.(목) 14:00	'18. 7. 23.(월) ~ 8. 2.(목) 14:00	숲체험·교육 생활속정원돌봄	

- ※ 「녹색자금통합관리시스템」에 회원가입 후 마감시한까지 시스템 입력 및 제안서 제출·접수
 - 마감시한 이후에는 접수가 자동으로 차단되며, 입력사항에 대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
 - 녹색자금통합관리시스템 URL 주소: afund.fowi.or.kr

□ 공모설명회

사업분야	일 시	장 소	비고	
나눔숲 조성사업	'18. 7. 11.(수) 10:00 ~ 12:00	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스파텔 지하 1층 태극홀	복지시설나눔숲(실내) 복지시설나눔숲(실외) 무장애나눔길	
숲체험·교육사업	'18. 7. 11.(수) 14:00 ~ 16:00	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스파텔 지하 1층 태극홀	숲체험·교육 생활속정원돌봄	

[※] 공모설명회 일정 변경 시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홈페이지(www.fowi.or.kr)에 별도 공고

□ 공모분야 및 지원액

(단위:백만원)

사업분야	응모자격 및 제안서 제출	사업시행자	공모사업비	사업당 지원액
합 계	_	_	21,000	
1. 나눔숲 조성사업	_	_	13,500	
1) 복지시설나눔숲(실외) 조성사업(100% 보조) - 사회복지시설 실외에 숲조성을 통한 환경개선	시회복자시설 1)	시・도 (시・군・구)	4,000	개소당 1억원 내외, 최대 2억원까지
2) 복지시설나눔숲(실내) 조성사업(100% 보조) - 사회복지시설 실내에 목재를 이용한 환경개선	시회복자시설 ¹⁾	목재문화 진흥회	2,500	개소당 1억원 내외, 최대 2억원까지
3)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(60% 보조) - 교통약자층도 쉽게 숲을 접할 수 있는 나눔길 조성	시·도(시·군·구) 공익법인2)		7,000	개소당 5억원 내외, 최대 7억원까지
2. 숲체험ㆍ교육사업	-	-	7,500	
1) 취약계층 숲체험·교육사업(100% 보조) - 사회·경제적 취약계층, 유아, 아동, 청소년 등의 정서 안정 및 신체 건강증진을 위한 숲체험교육, 목재체험 등 - 산림휴양문화체험, 산림환경기능증진을 위한 국제 교류 및 협력사업	비영리법인 산림학과 개설대학 우선지원기관·단체 ³⁾ 사회적기업 ⁴⁾ 컨소시엄 ⁵⁾		6,000	사업당 5천만원 내외, 최대 1.5억원까지 ※ 컨소시엄의 경우 최대 7.5억원까지
2) 생활속정원돌봄사업(100% 보조) - 기 조성된 복지시설나눔숲을 활용하여 소외계층 및 지역주민과의 소통·유대를 강화할 수 있도록 나눔숲을 가꾸고 돌보는 정원돌봄공동체 구성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	시회복지시설 6)	한국수목원 관리원	1,500	사업당 3천만원 내외, 최대 5천만원까지

※ 컨소시엄을 통한 응모는 '취약계층 숲체험·교육사업'에 한정함

□ 응모자격 및 절차

○ 진흥원 홈페이지(www.fowi.or.kr)의 2019년도 녹색자금 공모사업 참조

□ 응모방법 및 제출서류

- 응모방법: 「녹색자금통합관리시스템(gfund.fowi.or.kr)」에 회원가입 후 '18.7.23(월) 부터 온라인 접수 가능
 - ※ 접수 마감일은 통합관리시스템 접속 폭주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신청 요망
- 제출서류: 2019년도 녹색자금 공모사업 제안서 1부(사업제안서 양식: 별첨)

¹⁾ 시설운영 주체가 국가 · 지방자치단체 · 공공기관 · 비영리법인인 사회복지시설

^{2) 「}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시행령 제61조제4호에 따른 공익법인(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설립을 허가한 비영리법인)

^{3) 「}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58조제5항에 따른 우선지원기관·단체

⁴⁾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한 '사회적기업', 산림청장이 지정한 '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'

⁵⁾ 숲체험·교육사업 응모자격을 갖춘 각 기관·단체 등이 숲체험·교육사업에 공동참여할 목적으로 협약을 체결한 집합체

^{6) &#}x27;99년~'13년 녹색자금을 지원받아 복지시설나눔숲(실외 환경개선)을 조성한 사회복지시설

□ 유의사항

- 동일사업에 대하여 국가에서 당해연도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사업은 녹색자금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없음
 - ※ 녹색자금 공모사업 선정 후나 사업완료 후라도 녹색자금을 지원받은 연도에 동일사업에 대하여 국가에서 사업비(국비)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사업취소 및 사업비를 전액 회수하고 3년간 녹색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
- 사업비는 「녹삭자금사업 사업비 편성 및 집행지침」(별첨)에 따라 편성·집행함

□ 심사결정 통보

- ㅇ '18년 10월경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 및 개별 통지 예정
 - ※ 심사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□기탄

-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기타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아래 전화로 무의하시기 바람
 - ※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경영기획부 녹색자금관리실: 042-719-4071~7